제316회 시의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서울시립교향악단
정관 개정 보고

2023. 2.

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

정관 변경 보고사항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23년 월 일
제출자 : (재)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

▢ 보고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(정관) 제2항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.

▢ 제안이유

○ '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·운영 조례' 개정(22.3.10.)에 따른 정관 개정

○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'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(안)'에 따른 조례개정의 후속 조치로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임원 인사운영을 하고자 함

▢ 주요 개정 내용

○ 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해임)

-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

▢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임원) ① - ② (생 략)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 ④ (생 략)	제7조(임원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

▢ 참고사항

○ 관련 근거

-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(서울시 기획담당관-2423호)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　　의 : 해당 없음

○ 기　　타 : 이사회 의결 후, 서울시 및 소관 주무관청 승인 후 시행